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지방소득세 실무 해설

1 지방소득세 제도

1. 지방소득세 개요	1
2. 과세체계	5
3. 납세의무자	6
4. 납세지	9
5. 세율	16
6. 신고 및 징수	17
7.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통보	37
8. 소액 징수면제	38
9. 비과세	38

I. 지방소득세 제도

1. 지방소득세 개요

가. 개설

- (개념) 지방소득세는 '10년 舊 소득할 주민세에서 세목명이 변경되었으며 법인 및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법인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로 구분

인원	법인	82만개	세액	법인	8.7조원
	개인	736만명		개인	8.7조원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양도·청산소득 등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원(82만개)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양도·퇴직소득에 과세, 세수규모는 8.7조원(736만명)
- (신고체계)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3월)와 달리 지자체(4월)에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20년부터 지자체에 독자신고 시행(5월)

소득주체	국세	
	세 목	신고 의무
법인	법인세	세무서(3월)
개인	소득세	세무서(5월)

⇒

지방세	
세 목	신고 의무
법인지방소득세	지자체(4월)
개인지방소득세	세무서(5월)

신고방식
독자신고('15년)
독자신고('20년)

나. 연도별 변경내용

- (연혁) ①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로 도입('62년), ②주민세 소득할 신설·편입('73년), ③지방소득세 신설·편입('10년), ④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14년)

구분	세목명	징수방식	주요내용
'62년	주민세	부과	▶ 지자체에서 부과 고지(국세청이 소득세 결정사항을 8월 내무부에 통보)
'95년	주민세	신고	▶ 소득세 신고기한 내 지자체에 신고납부
'96년	주민세		▶ 소득세 신고기한의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납부
'00년	주민세		▶ 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지자체에 납부
'10년	지방소득세(개인)		▶ 독립세 전환하였으나 '16.12월말까지 독자신고 유예(「지방세법」 부칙 제13조)
'14년	개인지방소득세		▶ '19.12월말까지 독자신고 3년 유예
'17년	개인지방소득세		▶ '20년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
'20년	개인지방소득세		▶ '20년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

- (시행) 실질적인 독립세 완성을 위해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결정('13년)
 - 신고현황 및 특성*을 고려, 법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는 즉시 시행('15년), 개인지방소득세는 '17년 시행 결정하였으나 '19년까지 6년의 시행유예 후 '20년 독자신고 시행

구분('17년 기준)	납세인원	전자신고율	방문신고율
법인지방소득세	77만개	98%	2%
개인지방소득세	689만명	78%	22%

다. 정의(지방세법 제85조)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제4조(소득의 구분)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소득의 소득(지법§85①(1))
- 법인지방소득 :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지법§85①(2))
 - ※ 법인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소득, 고정자산처분소득, 자산양도소득 등
- 거주자 :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사업장 :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사업연도 :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연결납세방식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 연결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 연결집단 : 연결법인 전체
 - 연결모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하는 연결 법인
 - 연결사업연도 :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 위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운영 사례

- 인접한 장소에 사업주가 동일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를 볼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함 (행자부 지방세운영과-1700, 2012.6.1.)
- 연결모법인은 연결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소득·결손금 통산 등을 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각 법인의 회계에 따라 법인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개별법인인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 각각의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임 (행자부 지방세운영과-5989, 2010. 12. 22.)

< 참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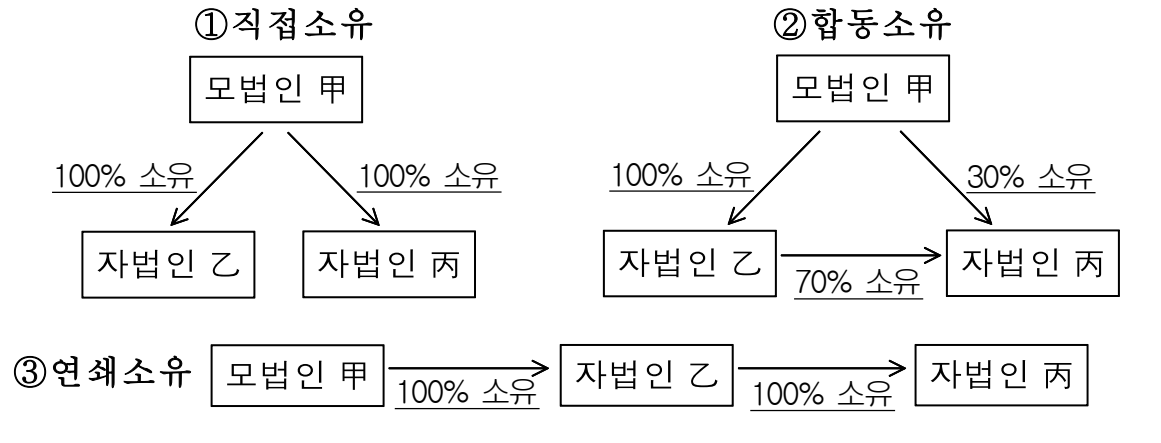
□ 연결납세제도

-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 유지 목적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법인세법」§76조의8①,⑤)
 - 내국법인(모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
 - * 우리사주조합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5%범위 내에서 예외를 허용
 - 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100%인 다른 내국법인
-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법인세법」§76조의8②)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시 연결사업연도를 신고
 - ☞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 등은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봄(법령§120조의13②)

* 완전지배관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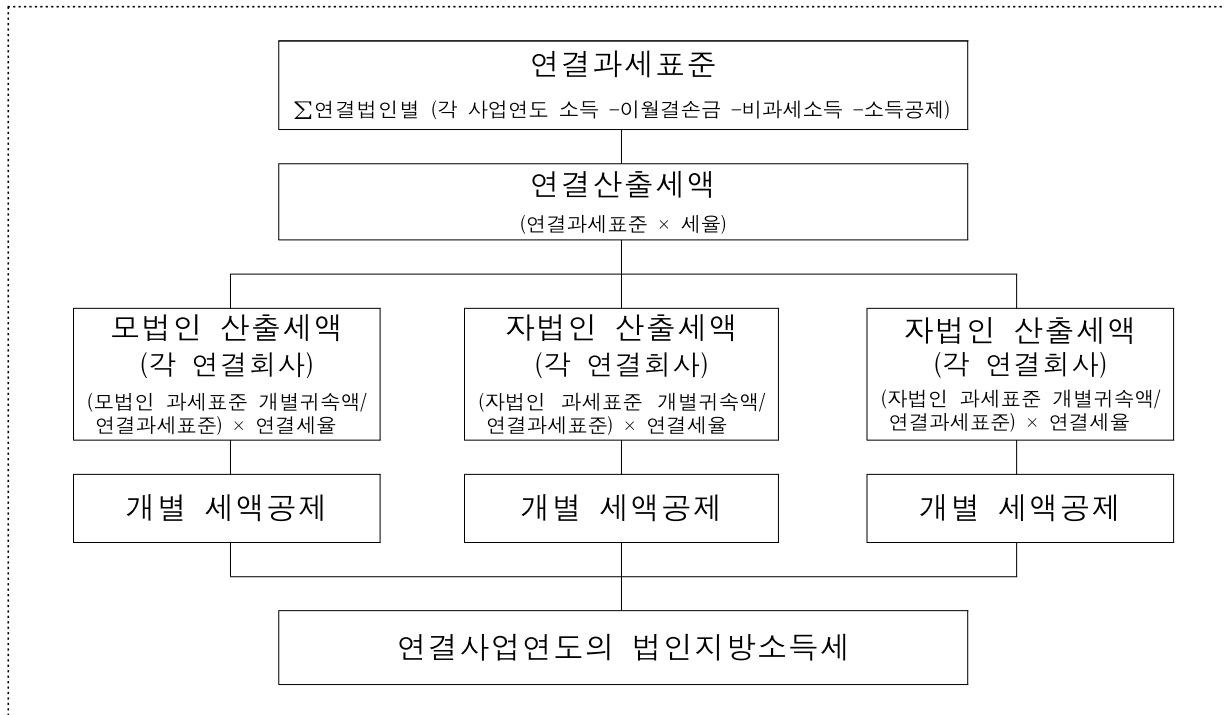
□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대상법인

- 연결법인의 모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 §120조의12①)
 - 비영리내국법인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연결법인의 자법인이 될 수 없는 법인(「법인세법 시행령」§120조의12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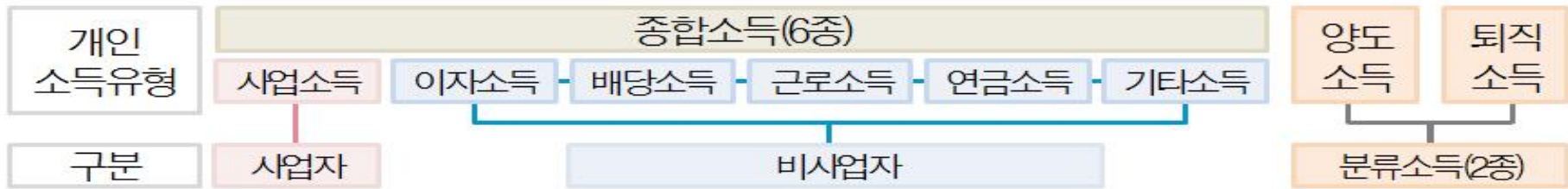
- 해산으로 청산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Paper Company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2. 과세체계

- (개인지방소득세 유형) 개인소득은 8종으로 종합소득 6종, 분류소득 2종으로 구분하고, 특별징수분은 국세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의미



※ (종합소득) 1년단위 소득유형을 합산과세, (분류소득) 장기간 발생 소득을 분류하여 과세

- (법인지방소득세 유형) 법인소득은 총액주의로 모든 소득을 합산

구분		사업소득	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국외 원천 소득	과세○	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내.국외 원천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과세X	과세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	과세○	과세X	과세X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	과세X	과세X

3 납세의무자

가.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지법 §86)

구분	개념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국외 원천소득 (무제한 납세의무)
	외국인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 주소 등이 있었던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	국내 원천소득·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 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 (제한 납세의무자)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나.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지법 §86)

구분	개념	납세의무 범위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국내·국외 원천소득 [무제한 납세의무자]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만 해당)	국내원천소득 [제한 납세의무자]
※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 본점(주사무소) :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사업상의 본거지로 정관 또는 등기부에 기재

** 실질적 관리장소 :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다. 특별징수분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지법 §103의13, §103의17, §103의18, §103의29, §103의52, §103의56)

※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에서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운영 사례

- Q)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을 인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항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기 위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지방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 지 여부
- A)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하여야 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의 추징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도 발생하는 것임
- 종업원수 20인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종교단체는 특별징수(원천징수) 지방소득세 반기납부 가능

4 납세지

가. 개인지방소득세(지법 §89)

- ('20년 이전) 소득세 신고당시 소득세법 §6~§8까지에 따른 납세지
→ ('20년 개정)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소득세법 §6~§7까지에 따른 납세지
-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지(소법§6 §7)

구분	납세지
거주자	·원칙 : 주소지 ·예외 :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비거주자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예외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발생장소

-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

구분	과세대상 자산
상속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 원천소득 발생장소
해외공무원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국내 주소가 없는 공무원은 소속기관 소재지

적용 요령

- 소득세법(소법§9)상 납세지 지정 제도는 개인지방소득세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아니함**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승인

*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이 지정

운영 사례

- 사실상의 소득의 지급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이자소득의 발생 및 지급과정 등 제반업무를 고려할 때, 예치대상자 선정, 예치한 금액의 관리, 이자소득 지급대상자 선정, 이자소득 지급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사실상 소득의 지급지로 판단**(행안부 지방세운영-614, 2010. 2.9.)
- 「이자·배당 소득 등」에는 이자·배당소득은 물론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본점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임**(행자부 세정13430-99, 2000. 1. 24.)

□ 2019년 법 개정사항 (지법§89①)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득세 납세지 <input type="radio"/> 법인 : 사업연도종료일(12.31.) 소재지 <input type="radio"/> 개인 : 국세 신고당시 주소지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 <input type="radio"/> 법인 : 좌동 <input type="radio"/> 개인 : 납세의무성립일(12.31.) 주소지

- (개정전) 국세(법인세·소득세)는 세입귀속에 다툼이 없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고려하여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규정
 - 지방세*의 경우 지자체신고를 시행 중인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특성에 맞는 별도의 납세지를, 개인분은 국세와 동일하게 납세지를 규정
 - * 「지방세법」 §89①('17.12.26.개정) ※ (개정前)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 (문제점) 지방세의 납세지는 세입의 귀속지가 됨에도 과세기간 종료 후 주소지 이전 시 소득발생지와 세입귀속지 간 불일치 문제 발생
- (개정사항)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세입귀속에 부합하고 사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성립일(12.31.) 당시 납세지로 개정

□ 납세의무 성립일

구 분	지방세기본법(§34)	국세기본법(§21)
일반적인 경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①7)	1. 과세기간 종료일(②1)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해산일(②1) 3.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③2)
특별징수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②1)	-
수시부과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②2)	-

- (원칙) 지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지기법 §34①7)하고 있어,
 -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국기법 §21②1)에 납세의무 성립
- (예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신고·결정을 위해 납세의무 성립이 필요한 사안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거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별도 규정
 - (국기법) ①청산소득 법인지방소득세는 해산일(§21②1), ②예정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21③2)에 성립
 - (지기법) ③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④수시부과 지방소득세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

나.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지법 §89)

구분	납세지
내국법인	· 원칙 :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예외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외국법인	· 원칙 : 국내사업장(둘 이상인 경우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예외 : 국내사업장 없고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자산 소재지

적용 요령

- 납세지의 지정(법법§10)규정은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0조*에 따라 **납세지가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로 인정되지 아니함**

*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이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등기된 주소와 상이, 조세포탈 우려 등) 납세지를 지정

운영 사례

- **법인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사에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 B사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의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 B사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이므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납세지 또한 법인세의 납세지인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라 할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52, 2011.1.6.)**

운영 사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직접 사용** 【행자부 세정 13407-98('03.2.6)】
 - 지방세법 제172조 제7호에 의하면 '사업장' 이라 함은 인적 설비,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을 말함
 - 같은 법 제175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이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별로 각각 부과하는 바, 이 경우 법인세할의 안분 건축물 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로 규정하고 있음
 - *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함
 - ●●SILO 부지 내 벽돌공장(978.6㎡)의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벽돌 공장 내부가 공실로 관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에 산입하여 안분할 수 없음



다. 특별징수분

○ 일반적인 납세지(소법 §7)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개인	거주자인 경우	•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인 경우	•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법인		① 원 칙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그 법인의 지점 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그 사업장 소재지(그 사업장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 제외) ※ 다만, 본점(주사무소) 일괄 납부 승인 받거나 부가가치세 사업자 단위 등록한 법인의 납세지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예외적인 납세지

구분	납세지	적용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관할 시·군·구	개인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소득의 지급지 관할 시·군·구	개인 법인
복권 당첨금 등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해당 복권의 판매지 관할 시·군·구	개인 법인
연금소득	수령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개인

적용 요령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국세)의 경우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더라도 본점일괄납부 신청 또는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 원천징수와 달리 본점일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근무지가 납세지가 됨
- 근무지가 유동적인 자의 납세지
근무지가 유동적인 승객·화물 등의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운전원, 안내원, 보조원)의 근무지는 동 업무를 시작 또는 마감하는 장소(차고지, 기숙사, 현장사무실 등)가 위치한 곳을 근무지로 보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납세지를 결정하여야 함
- 근로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한 주민세 소득세할 납세지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분의 납세지는 근로소득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므로 출장소 직원은 출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임
- 사업장 이전 중 법인이 특별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
이전 중인 법인이 특별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특별징수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

5 세율

가. 개인지방소득세

- '13년 귀속분까지 : 소득세액의 10%
- '14년 귀속분부터 : 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3.8%
- '17년 귀속분부터 : 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4.0%
- '18년 귀속분부터 : 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4.2%

○ 표준세율(지법 §92①) :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세율	세율(속산)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0.6%	0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1.5%	108,000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2.4%	522,000원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5%	1,490,000원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8%	1,940,000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4.0%	2,540,000원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4.2%	3,540,000원

※ '18년 세율 인상 : 과세표준 3억원 ~ 5억원 (종전)3.8%→(개정)4.0%, 5억 초과 (종전)4.0%→(개정)4.2%

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 율				
	2008.1.1.이전	2009.1.1.이후	2010.1.1.이후	2012.1.1.이후	2018.1.1.이후
2억원 이하	1.1%	1.1%	1%	1%	1%
2억원 초과	2.5%	2.2%	2.2%	2%	2%
200억원 초과				2.2%	2.2%
3,000억원 초과				2.2%	2.5%

※ '18년 세율 인상 :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종전) 2.2% → (개정) 2.5%

다. 특별징수분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과세표준) × 10%(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하는 법인세(과세표준) × 10%(세율)

6. 신고 및 징수

가. 개인분

○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시행('20년)

- (법적근거)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2014.1.1.개정) 부칙 §13

세무서장이 소득세와 함께 처리하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부과 업무에 대해 '20.1.1.부터 지자체장이 처리

- (업무이관 기준) '19년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도 '20.1.1.이후 신고·부과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처리

○ 확정신고

-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함(지법 §95)

- 소득세와 같이 지방소득세도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임

○ 예정신고

-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해당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동일)

○ 무관할 신고제도 도입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가 시행되는 '20년부터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관계없이 쏘지자체에서 신고·경정청구 가능 ※ '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서 신고, 경정청구 하는 경우도 무관할 신고제도 적용

- (대상)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종합·퇴직소득 확정신고,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 비거주자유가증권 양도소득 신고

○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확정(국세, 지방세 동일) : 5.1.~5.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1.~6.30.)

※ 부동산매매업자(사업소득)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양도소득세 확정 : 5.1. ~ 5.31.(국세) + 2개월 (사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2개월)

- 양도소득세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국세) + 2개월

○ 수정신고 :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세액을 증액하는 확정 행위로, 국세인 소득세 수정신고 여부에 상관 없이 지자체 신고 처리

※ 지자체신고와 함께 무관할 신고제도가 도입·운영됨에 유의

적용 요령

■ 지방세기본법 개정(2016.1.1 시행)으로 종전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수정신고로 인정되었으나, '16.1.1이후 수정신고분부터 신고만 하더라도 수정신고로 인정됨(2년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적용됨)

※ 소득세는 '15.1.1 신고분부터 개정사항 적용 중

○ 결정과 경정 :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여야 함

나. 법인지방소득세

○ 확정신고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지법 §103의23)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법법§60)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신고기한 1개월 연장 가능

※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적용 요령

■ 내국법인 신고기한연장 관련 유의사항

법인세는 '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 되어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연장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의 기한연장 신청제도가 없음**

※ (예시) 12월말 결산법인의 2017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된 경우 '18.4.30.(월)까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 (참고)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내 신고 납부(§91 ①)

적용 요령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 참고)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91 ⑤)하였으나, 해당조항은 삭제됨
- '17년 신고분부터 '안분신고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신고서'와 통합하고, 안분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 제출하도록 안분신고 서류 간소화

○ 확정신고시 안분방법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지법 §89②)
-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지령 §88조①)
- *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 :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 중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지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면제 제외(지법 §103조의24 ⑥)

- 안분순서는 ① 산출세액 계산 →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사업장 면적 안분 → ③ 관할 지자체의 탄력세율 반영한 세액을 가감 → ④ 지자체별 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반영

적용 요령

• 자치단체별 신고·납부세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다음 지자체별 사업장 안분율(이하 "안분율"이라 함)에 따라 안분

$$\left(\frac{\text{관할 자치단체 안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관할 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right) \div 2$$

- 사업장 : 인적 설비(종업원) 또는 물적 설비(건축물 등)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모텔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 건설현장사무소, 연구시설, 기숙사, 연수원 등)
- 종업원 :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외근무자는 제외
-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 연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저유조·저장창고·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

- 사업장용 건축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임
 - ※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사업장 안분면적에 불포함, 법인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
-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고지하기 전까지는 가산세 부담없이 수정신고 할 수 있음
 - ※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17년 개정)

② 세액공제.감면 : 지자체별 공제.감면세액을 차감

③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등 지방세기본법의 가산세는 해당 지자체별 적용 가산

④ 기납부세액 (특별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 : 특별징수된 기납부세액은 안분율에 따라 지자체별로 안분

※ 초과납부하여 환급세액(특별징수세액)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본점 소재지 지자체 신고서의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

- 수시부과된 기납부세액은 해당 자치단체의 산출세액에서 차감

⑤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안 분 방 법

산출세액 (×) 안분율 사업장별 산출세액	- 전체사업장 공통 공제·감면일 경우 안분하여 차감. - 특정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공제·감면일 경우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 '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감면 규정 없음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추가납부세액	⇒ - 전체사업장 공통일 경우 안분하여 가산
사업장별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세지와 상관없이 기납부세액을 아래의 방법으로 안분]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을 사업장별로 안분 - 기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총부담세액에 상당하는 기납부세액은 안분, 초과분은 본점 기납부에 더함 ※ 특별징수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간 정산
(±)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차감납부할세액	⇒ - 舊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및 동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적용 기준(지칙§38의5 관련)

1. 종업원 수	
구 분	적 용 례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만을 받는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 수에 포함
다.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사실상 해당 사업소에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 수에 포함
라. 국외파견자 또는 국외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국내교육 중인 사람	종업원 수에 포함
바.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문판매원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수임 처리하기로 하고 월간 또는 연간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	종업원 수에 포함
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이사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자. 소속회사 직원이 용역이나 도급계약 등에 의하여 1년이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자	(계약업체) 종업원 수에 포함
차.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	(본점 또는 주사업장) 종업원 수에 포함

2. 건축물 연면적 등	
구 분	적 용 례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사용중인 공실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사용하던 중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적 미사용 상태인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나.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
다. 공동도급공사 수행을 위한 현장 사무소	각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로 실제 사용면적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도급공사 지분별로 안분
라. 건설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분양 상태로 소유 중인 주택과 상가	법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분대상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음
마.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 없어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등록시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라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바. 수평투영면적의 적용	지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포함
	기계장치 또는 각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정된 상태에서의 바닥면적을 적용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의 설계도면상 면적을 적용
사. 기계장치의 범위	기계장치란 동력을 이용한 작업도구 중 특정장소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하여 적용함

적용 요령

- 용역 및 협력업체 직원이 파견되어 계약업체의 사업장 내 일정한 장소에서 계약업체의 목적사업을 함께 수행할 경우, 파견된 직원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이며,**
 - 계약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용역업체의 종업원 수에 포함될 것임**
- ※ (예시) (주)00자동차의 주요부품 제조에 필요한 인력 00명을 (주)00부품과의 하도급계약 체결 후 2년간 (주)00자동차의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 (주)00자동차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종업원 수에 포함
- 법인의 소속직원이 사업장 등 일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경우, 인적설비만을 갖춘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야하는지 여부?
 - 물적설비 없이 인적설비만 있는 사업장의 종업원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종업원 수에 포함해야 함
- ※ (예시) (주)00보험 소속의 보험모집인이 지점 등 일정한 장소가 없이 보험모집인의 주소지 등에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 ⇒ (주)00보험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시 본사의 종업원으로 포함
- 공장 등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후생복지시설 중 임·직원의 기숙사,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숙사는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전용시설에 해당하는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음**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지법 §103의24①)
- ※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세를 경정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기 전까지 납세자는 수정신고 가능

적용 요령

- ('13년 이전 귀속분) 법인세액이 결정·경정되는 경우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 연장시 신고기간 만료일, 수정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내에 법인세 총액(가산세포함)의 10%를 신고납부
 - 1개월내 신고납부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 세액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신고 납부 가능('14년 귀속분 부터 舊 지방세법의' 10% 미달시 가감신고 제도' 폐지)
- ('14년 이후 귀속분)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하여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법인세 결정·경정시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상 세율과 가산세를 적용하여 반드시 수정신고·납부하며 당초 세액의 10%미달시에도 수정신고

- (오류 신고)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부과고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 또는 경정 청구가 가능
 - 그에 따른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은 없음(지법 §103의24②,③)
 - 다만,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확정신고(수정신고 포함)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부과

- (경정청구 자치단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청 가능
 - 해당 법인이 경정청구한 내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지법 § 103의24⑤)

운영 사례 : 안분신고 오류 등 가산세 적용

-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는 법인지방소득세 전체 신고.납부세액은 맞으나 납세지 또는 안분착오로 자치단체별 납부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만을 의미 (당초 신고.납부 세액 합계 = 수정신고.경정청구 세액 합계)하며, 그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부과지를 받기 전까지만 유효 ⇒ 관할 지자체가 고지할 경우 가산세.환급가산금 적용

<사례1>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 0

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게 신고 ➡ 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없음

구 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액	당초 신고납부 세액	추가(환급)세액	비고
A지방	100	무신고	100 추가	가산세 X
B지방	140	120	20 추가	가산세 X
C지방	160	250	(90) 환급	환급가산금 X
D지방	100	130	(30) 환급	환급가산금 X
합 계	500	500	0	

나.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신고 ➡ 가산세는 있고, 환급가산금은 없음

구 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액	당초 신고납부 세액	추가(환급)세액	비고
A지방	300	500	(200) 환급	환급가산금X
B지방	200	무신고	200 추가	가산세O
합 계	500	500	0*	

* 당초 신고.납부세액 합계(500)가 수정신고.경정청구 세액 합계(500)와 일치하여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맞으나, '17년부터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운영 사례 : 안분신고 오류 등 가산세 적용

<사례2>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 X

구 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액	당초신고납부 세액	추가(환급)세액	비고
A지방	100	0	100 추가	가산세○
B지방	140	130	10 추가	가산세○
C지방	260	300	(40) 환급	환급가산금○
합 계	500	430	70*	

* 당초 신고.납부세액(430)이 수정신고 세액합계(500)보다 적으므로 납세지 또는 안분세액의 오류가 아님

❖ 수정신고 등 비교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대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사유	당초 과소신고	당초 과대신고 또는 후발적 과대 * 후발적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대상	당초 신고 없음
기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제척기간 전까지)	(통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결정·경정 후에는 있음을 안 날로 90일 이내 (후발적)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제척기간 전까지)
효력	확정력 있음(경정 없음)	확정력 없음(결정·경정 있음)	확정력 없음(결정 있음)
조치	-	2개월 이내 결정·경정 또는 이유 없음 통보 * 미 통보시 불복청구 가능	3개월 이내 결정

○ 결정 및 경정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지법 §103의25)

○ 수시부과 결정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연도 중 내국법인에게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가능(지법 §103의26①)

* 수시부과사유(지령 §100의17① 및 법령 §108①)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 .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다. 특별징수분

- (정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지기법 §2① 20호)
 - ※ 등록면허세(등록분, ex특허권 등록 → 특허청장),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주행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지기법 §2①21호)
 - 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납세자에는 해당 함

적용 요령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법인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함

운영 사례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기 위해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지방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 지 여부
 -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하여야 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의 추징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도 발생함

○ (특별징수 방법)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

소득자	국세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비 고
개인	○	○	
법인	○	○	※ 내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는 '15년 1월부터 최초 시행

○ (특별징수 시기)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소득별 원천징수시기 특례

구분	원천징수시기 특례
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부터 11월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이자·배당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이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

-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지법 §103의14, §103의17, §103의29)

※ 「지방세기본법」제56조에 따른 가산세액

- ㉠ + ㉡ 의 합계액(미납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0분의 10 한도)
 -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
 - ㉡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만분의 3)
- 국가 또는 자치단체, 주한미국군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는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지법 §103조의14 단서)
- (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징수·납부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특별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지법 §103의17)

○ (내국법인 특별징수 정산제도) 특별징수의무자는 이자·배당소득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지급기준으로 '15.1.1. 이후 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지법 법률 제12153호 부칙 §1)

※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 (예시) '17년 10.1.~12.31. 발생한 이자소득 1억원을 '18.1.15. 지급할 경우

①'17.10.1~'17.12.31. 이자소득 발생(1억원)	②'18.1.15 1,400만원 법인세 원천징수 14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차액 8,460만원 소득자에 지급	③'18.2.10. 원천징수세액 1,400만원 세무서 납부 특별징수세액 140만원 지자체 납부
--------------------------------------	---	--

적용 요령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세지

- 원칙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예외 : 법인의 지점 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 그 소득의 지급지

7.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통보

가. 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한 경우 : 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 ※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전자신고 방식으로 신고 받은 경우 : 신고를 받은 즉시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 한 경우 : 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 ※ (수정신고) 소득세 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나. 법인세 신고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한 경우 : 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 ※ (수정신고) 법인세 신고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다. 기타 세액결정·경정, 원천징수 등

-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 결정·경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 한 경우 :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 미납하여 납부고지 한 경우 :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 소득세·법인세를 환급한 경우 :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8. 소액 징수면제

○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소액 징수면제 적용(지법 §103조의60)

※ '19.1.1.이후 부과고지 하는 경우부터 적용 (자진납부하는 경우는 소액 징수면제 적용×)

○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시, 당해 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소법 §86 1호, 범법 §75)

- 다만,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함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적용 요령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소득세의 10%이므로, 소득세·법인세가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될 수 없음

9. 비과세

○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음